

<의안번호 제2009 - 25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 육 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7. 01.

2. 제안이유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재원의 지원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써 지원하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를 일부 삭제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뜻을 명확히 함과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계법령에 맞게 신설함 (안 제1조, 제2조).
- “승강기산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함

- 지원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
 - “기술혁신지원기관”(안 제2조제2호 삭제)
 - “산·학·연·관 협력”(안 제2조제3호 삭제)
 - 목적조항을 간명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함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안 제2조제4호 신설)
 - “수익용 기본재산”(안 제2조제6호 신설)
 - 현행 제2조제4호(“교육용 기본재산”)를 제5호로 이동
-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원의 지원근거에 대한 상위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본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다.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제2항 각 호).
-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
→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 승강기산업 기술 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
→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개선사업
 -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28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8조, 제4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시 추경예산 확보

다. 입법예고(2009. 5. 19 ~ 6.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중 안 제3조(지원 등)제2항제3호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인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또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개정 1997.1.13>)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삭제 <1999.8.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 삭제 <1999.8.31>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설립의 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의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개정 1999.1.21>)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7.1.13>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64.11.10>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90.4.7>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 「**고등교육법**」 [시행 2009.1.30] [법률 제9356호, 2009.1.3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원) ①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의안번호 제2009 - 26호>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7. 01.

2. 제안이유

승강기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이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추진과 승강기산업체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실무위원회, 운영비 및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각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보조금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입지 보조금·투자 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 벨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 지원

- 승강기산업체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함

○ 행정적 지원

- 유치한 승강기산업체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하

기 위해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을 전담관리관으로 지정
· 운영함

○ 보조금 지원신청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분담 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함

라. 그 밖에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후관리와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 포상, 다른 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등 조례의 절차적·보충적인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 2009.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6조, 제4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시 추경예산 확보

다. 입법예고(2009. 5. 19 ~ 6.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의 벨리 이전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이 조례는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의 책무(안 제3조), 거창승강기산업벨리추진위원회(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 보칙(안 제19조부터 안 23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설치 및 기능)에서 거창승강기산업벨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벨리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거창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4조(보조금 지원)에서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과 제2호에서 규정한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하여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제2항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벨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단서조항은 다른 조례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에 관한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 조례안이 승강기산업의 특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이지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에 근거하여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전부이전”이란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본사, 연구소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종전의 사업이나 확장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부이전”이란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종전의 사업이나 확장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19.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협의 진행 중인 기업 및 문의 기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매 분기초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3.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이전하는 경우
 - 나. 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하여 전부이전하는 경우
 - 다.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이전하는 경우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제1호·제2호·제3호가목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2.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입지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반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8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2(투자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5까지, 낙후지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경우 최대 100분의 9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 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⑦ 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⑪ 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내지 제11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

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지방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한도) ①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이전 건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
 2. 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2006.3.3,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 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기업의 지방이전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6.3.3>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기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의안번호 제2009 - 27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6.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7. 01.

2. 제안이유

승강기산업체를 조례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써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정의)에 승강기산업체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공장, 본사, 연구소 포함)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법인·단체]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 지원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신설).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3. 17 ~ 4. 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승강기산업체를 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기업’이란 정의 내용에 승강기산업체를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항목 표에 보면 식료품제조업, 제철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승강기제조업 등 여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승강기제조업 분야도 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조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안을 개정하여 『승강기산업체』란 관련 용어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